구 분	A-1	A-2	B-1	B-2	B-3	B-4	C-1	C-2	D-1	D-2	E	F-1	F-2	G	H
건폐율	60%이하	6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70%이하	7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60%이하	주차장 1, 2 : 70%이하 주차장 6 : 60%이하 주차장 3, 4, 5 : 60%이하
용적률	160%이하	160%이하	230%이하	200%이하	230%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350%이하	350%이하	150%이하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주차장 1, 2 : 350%이하 주차장 6 : 200%이하 주차장 3, 4, 5 : 200%이하
높 이	지상3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지상3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지상18층이하	지상15층이하	지상20층 이하	지상4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5층까지 허용)	지상4층이하	지상4층이하	지상5층이하	지상7층이하	지상5층이하	지상5층이하	지상5층이하	지상4층이하	주차장 1, 2 : 7층 이하 주차장 6 : 4층 이하 주차장 3, 4, 5 : 3층 이하
배 치 및 건축선	10~12m도로변(소1-4, 소1-8) 건축한계선 1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7m도로변・10~12m도로변(소1-4, 소1-8) 건축한계선 1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0~12m도로변(소1-8) 건축한계선 1m 지정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지정	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15m도로변(중2-425) 건축한계선 1m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2m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2m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5m도로변・10~12m도로변(소1-8) 건축한계선 1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7m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0~12m도로변(소1-8) 건축한계선 1m 지정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12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허 용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단, 타종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노유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존치건물중 기존근생 시설은 허용 (단, 신축시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단, 2층이하에 한하여 허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 지구의 허용용도중 불허하는 용도가 아닌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 지구의 허용용도중 불허하는 용도가 아닌것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 지구의 허용용도중 불허하는 용도가 아닌것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 지구의 허용용도중 불허하는 용도가 아닌것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부속 용도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청사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등 그부속 용도)	공공청사 (소방서등 그 부속용도)	-문화시설 및 그 부속용도	주차장 1, 2, 6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외 용도 20%미만 허용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운동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오피스텔 제외) 주차장 3, 4, 5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단, 주차장 용도만 가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 제2종근린생활중 변전소, 정수장등 유사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장등 -지하층 주거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주택(주상복합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 타용도 복합시 허용) -1층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수리점 등)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제외)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 타용도 복합시 허용) -1층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수리점 등)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단, 제2호, 제4호, 제10호 내지 제14호 중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및 시설은 제외한다.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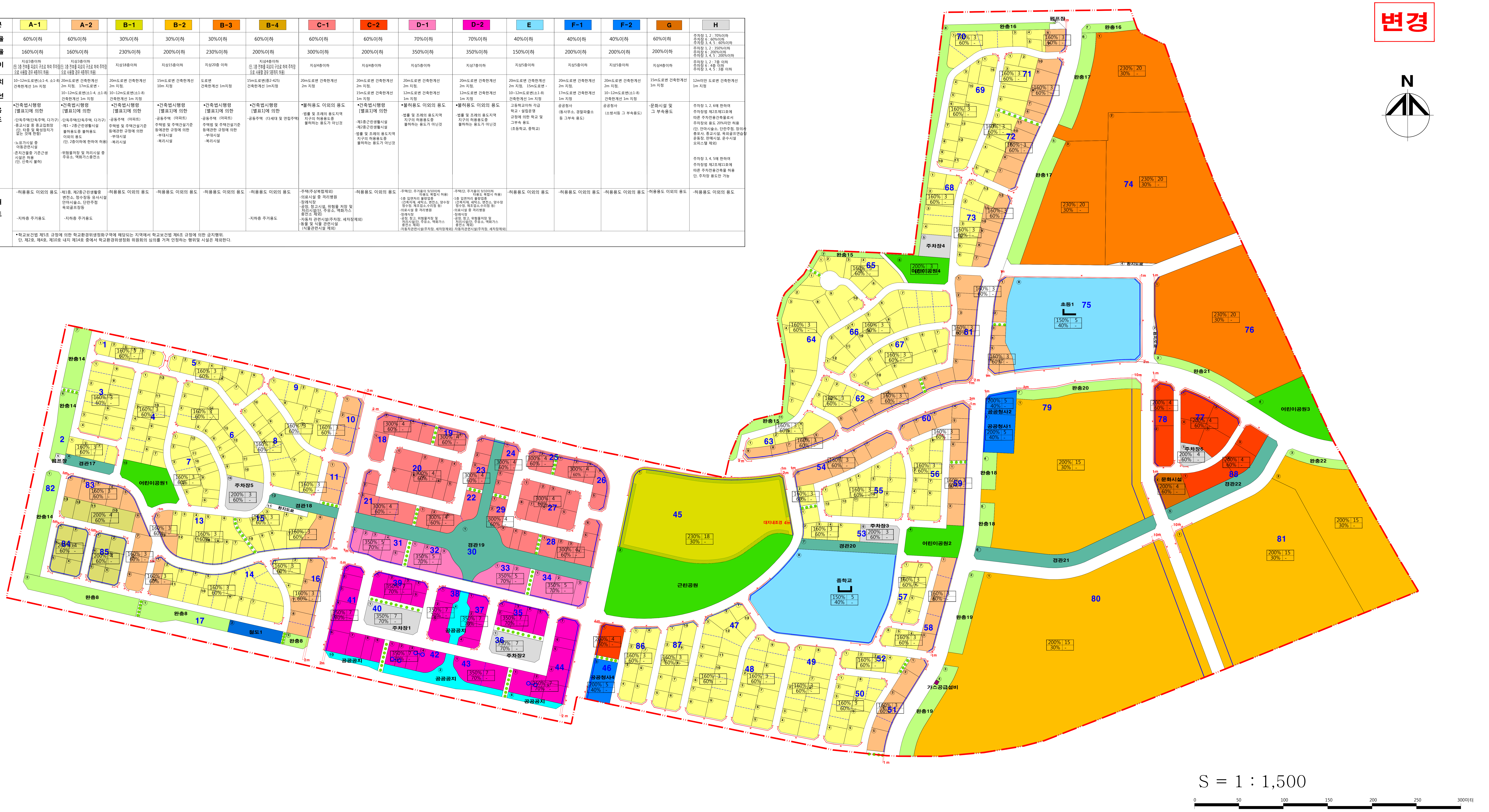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분할가능선
●●●●	보행자전용도로
	건 축 한 계 선
	차량출입불허구간
🟩	완 충 녹 지
🟩	경 관 녹 지
🟩	공 원
🟦	공 공 공 지
●—●	공동개발(지정)
🟦	공 공 청 사
🟦	학 교
🟧	문 화 시 설
⬜	주 차 장
⬜	대지내조경
🟪	가스공급설비
🟦	철 도
⬜	오수펌프장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